

	실병관리청	보	도 침	밝고	사 료
배 포 일	포 일 2020. 11. 8. (총 21매)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담 당 자 권 승 현, 박 진 희		[ 전	~[	043-719-937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8일]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427명(해외유입 3,93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4,968명(91.0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9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78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18	54	0	7	2	2	1	0	0	23	9	2	8	0	3	2	5	0
누계	23,495	5,852	540	7,100	950	452	409	120	64	4,925	274	152	569	119	148	1,519	262	40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5	0	6	9	8	2	0	14	11	17	8
누계	3,932	26	1,962	712	1,105	110	17	1,849	2,083	2,188	1,744
1 <b>T</b> /11	J.35Z	(0.7%)	(49.9%)	(18.1%)	(28.1%)	(2.8%)	(0.4%)	(47.0%)	(53.0%)	(55.6%)	(44.4%)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 폴란드 2명, 터키 5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1명), 멕시코 3명(1명), 아프리카 : 에티오피아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11.7.(토) 0시 기준	24,910	1,897	53	477
11.8.(일) 0시 기준	24,968	1,981	58	478
변동	(+)58	(+)84	(+)5	(+)1

<sup>\* 11</sup>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위중증**: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1월 8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강남구 역삼역**과 관련하여 10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 (구분) 직원 3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4명, 가족 4명
  - **서울 서초구 빌딩**과 관련하여 11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 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 (구분) 지표환자. 근무자 10명. 지인 1명. 직원가족 1명
  -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와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	계	직원 (지표환자 포함)	가족	지인
전일	19	10	8	1
금일	22(+3)	10	8	4(+3)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구분	계	이용자 (지표환자포함)	종사자	방문자	가족 및 지인 등
전일	28	17	6	1	4
금일	36(+8)	20(+3)	7(+1)	1	8(+4)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 및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구분	계	간병인 및 직원	환자 및 이용자	가족 및 지인
안양시 일가족	4	-	-	4
남천병원	22	3	11	8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34	8	14	12
오산메디컬재활요양병원	25(+6)	3(+1)	22(+5)	-
아이사랑어린이집 관련	15(+4)	2	2	11(+4)
금호노인요양원*	4(+4)	2(+2)	2(+2)	-
총계	104(+14)	18(+3)	51(+7)	35(+4)

- \* (**추정감염경로**) 아이사랑어린이집 확진자의 가족→지인모임→금호노인요양원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9명\*이다.

	계		학교 관련	학교 관련			그 외 추가 전파				
구분		학생	교직원	가족	동료	지인	방문객	가족 및 기타			
학교	8	3	-	4	-	1	-	-			
헬스장A	24	-	-	-	2	4	7	11			
헬스장B	11	-	-	-	-	1	9	1			
연구센터	6	-	-	-	4	-	-	2			
독서모임	20(+5)	-	-	-	-	12	5(+5)	3			
계	69(+5)	3	-	4	6	18	21(+5)	17			

- \* (지역) 경기 21명, 서울 45명(+5), 광주 2명, 제주 1명
-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구분	계	직장동료 (지표환자포함)	주점 종사자	주점 방문자 및 지인	노래방	사우나 이용객	사우나 이용객의 가족 및 지인
전일	33	6	3	10	1	8	5
금일	35(+2)	8(+2)	3	10	1	8	5









○ 충남 천안(신부동) 콜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콜센터	관련	추가전파	
구분	계	7층 근무자 (지표환자 포함)	10은 그는사		지인
전일	30	21	1	8	-
금일	32(+2)	21	1	9(+1)	1(+1)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교인	교회 외 추가 전파					
丁正	71	(지표환자 포함)	가족	지인	직장 동료	기타		
11.2. 기준	30	23	-	3	2	2		
금일	32(+2)	25(+2)	-	3	2	2		

- \* (지역) 대구 29명(+1), 경북 1명(+1), 인천 1명, 전북 1명
- 경남 창원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격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78	게	제사모임 참석자	제사모임 외 전파					
구분	계	(지표환자포함)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전일	24	10	4	6	2	2		
금일	28(+4)	10	4	6	2	6(+4*)		

\* (분류) 지인의 직장동료 2명, 동선노출자의 가족 2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
-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5. 마스크 착용 관련 리플릿
-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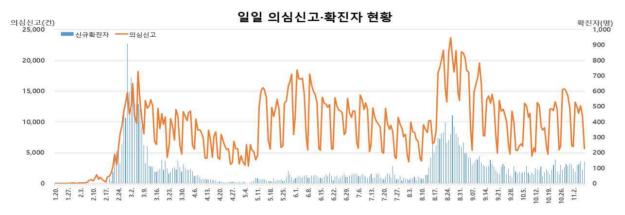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① 일일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27,42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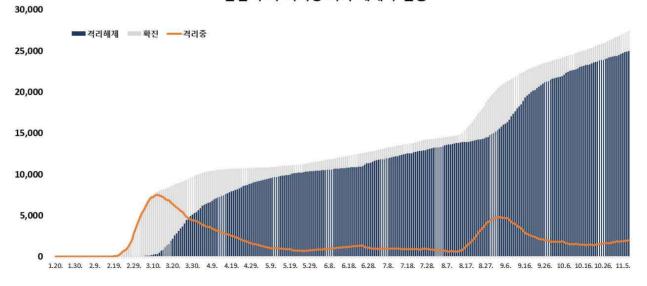
###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sup>**</sup>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TE	5/1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급시 중	크지 급 8
11.7.(토) 0시 기준	2,697,249	27,284	24,910	1,897	477	26,217	2,643,748
11.8.(일) 0시 기준	2,702,880	27,427	24,968	1,981	478	25,648	2,649,805
변동	+5,631	+143	+58	+84	+1	-569	+6,057

- \*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27,427명)

###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TICH	금일	신규	하기기도계	(0/)	인구10만명당
지역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누계	(%)	발생률 <sup>*</sup>
서울	54	0	6,326	(23.06)	64.99
부산	0	0	600	(2.19)	17.59
대구	7	0	7,191	(26.22)	295.14
인천	2	1	1,065	(3.88)	36.03
광주	2	0	518	(1.89)	35.56
대전	1	0	445	(1.62)	30.19
울산	0	1	166	(0.61)	14.47
세종	0	0	82	(0.30)	23.95
경기	23	2	5,672	(20.68)	42.81
강원	9	0	305	(1.11)	19.80
충북	2	0	197	(0.72)	12.32
충남	8	1	644	(2.35)	30.34
전북	0	0	167	(0.61)	9.19
전남	3	1	194	(0.71)	10.40
경북	2	0	1,593	(5.81)	59.83
경남	5	5	353	(1.29)	10.50
제주	0	0	60	(0.22)	8.95
검역	0	14	1,849	(6.74)	-
총합계	118	25	27,427	(100)	52.90

<sup>\*</sup>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북	충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젲 주	검역
격리 중	1,981	598	33	45	51	8	16	8	3	576	60	16		9	17	14	52	1	354
격리해제	24,968	5,650	554	6,950	1,00 3	507	423	156	79	5,001	242	178	516	157	175	1,522	301	59	1,495
사망	478	78	13	196	11	3	6	2	0	95	3		8	1	2	57	0	0	0
합계	27,427	6,326	600	7,191	1,06 5	518	445	166	82	5,672	305	197	644	167	194	1,593	353	60	1,849

<sup>\* 11</sup>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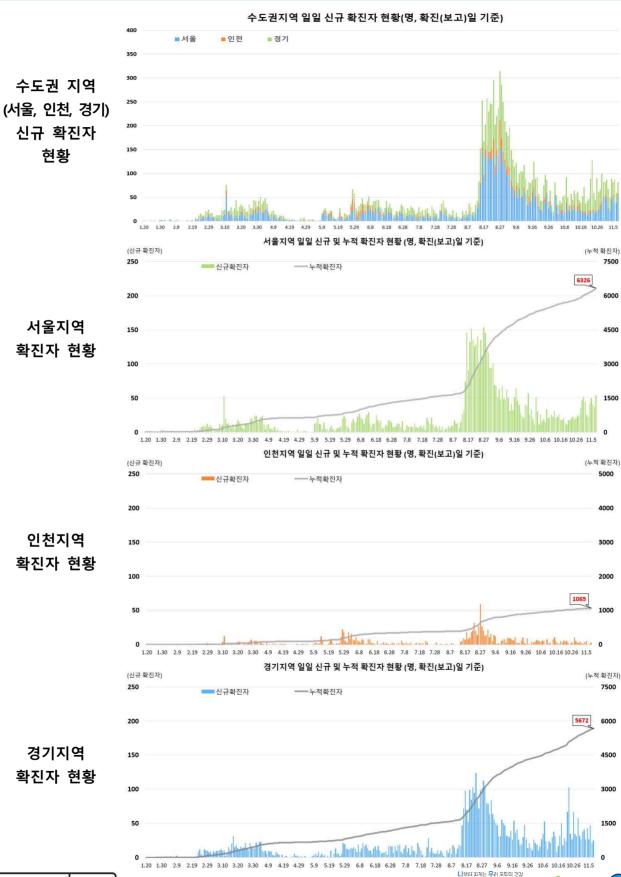




<sup>\*</sup>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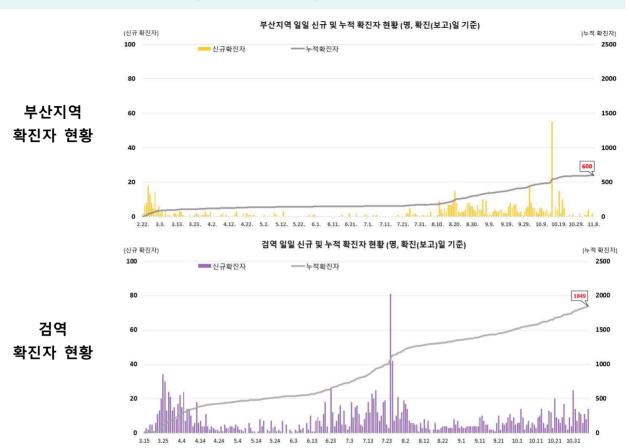
##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8. 0시 기준, 27,427명)

###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7	-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43	(100)	27,427	(100)	52.90
 성별	남성	76	(53.15)	12,827	(46.77)	49.60
O Z	여성	67	(46.85)	14,600	(53.23)	56.19
	80세 이상	9	(6.29)	1,183	(4.31)	62.29
	70-79	24	(16.78)	2,193	(8.00)	60.80
	60-69	24	(16.78)	4,341	(15.83)	68.42
	50-59	22	(15.38)	5,017	(18.29)	57.89
연령	40-49	22	(15.38)	3,717	(13.55)	44.31
	30-39	26	(18.18)	3,440	(12.54)	48.83
	20-29	9	(6.29)	5,301	(19.33)	77.88
	10-19	4	(2.80)	1,512	(5.51)	30.60
	0-9	3	(2.10)	723	(2.64)	17.43

<sup>\*</sup>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8. 0시 기준)

###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7	·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	(100)	478	(100)	1.74
 성별	남성	1	(100)	252	(52.72)	1.96
~ ~ ~ ~ ~ ~ ~ ~ ~ ~ ~ ~ ~ ~ ~ ~ ~ ~ ~	여성	0	(0.00)	226	(47.28)	1.55
	80세 이상	1	(100)	241	(50.42)	20.37
	70-79	0	(0.00)	155	(32.43)	7.07
	60-69	0	(0.00)	54	(11.30)	1.24
	50-59	0	(0.00)	22	(4.60)	0.44
연령	40-49	0	(0.00)	4	(0.84)	0.11
	30-39	0	(0.00)	2	(0.42)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sup>\*</sup>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 일별 사망자 현황 >



### < 위중증 현황 >

구분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계	53	52	52	53	51	54	51	49	52	53	51	50	53	58

구분	위중증 계	(	%	)	
<b>Л</b>	58	(	100.0	)	
80세 이상	12	(	20.7	)	
70-79세	26	(	44.8	)	
60-69세	14	(	24.1	)	
50-59세	4	(	6.9	)	
40-49세	2	(	3.4	)	
30-39세	0	(	0.0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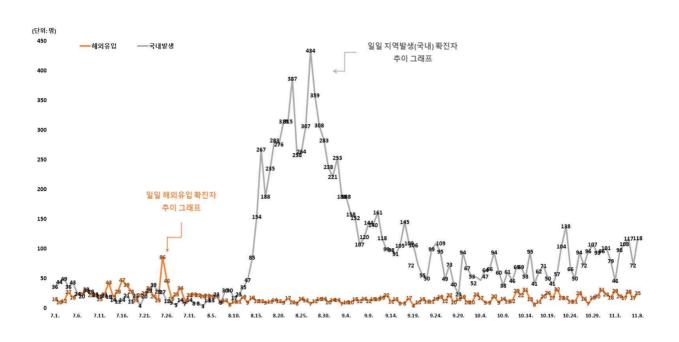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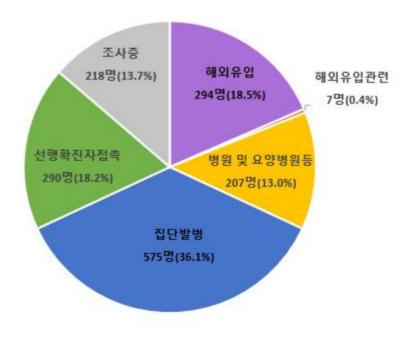


## **⑤ 감염경로**

###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 최근 2주간 (10.26일 0시~11.8일 0시까지 신고된 1,591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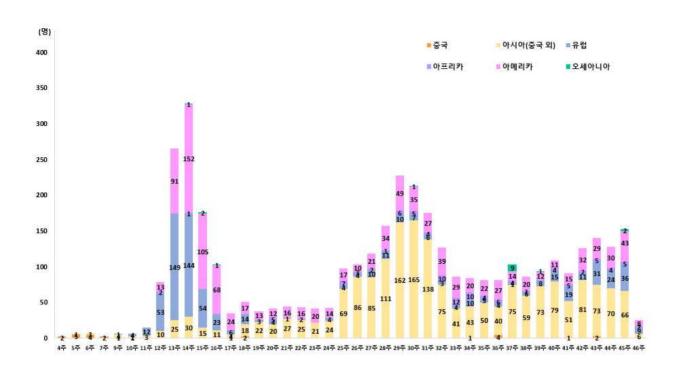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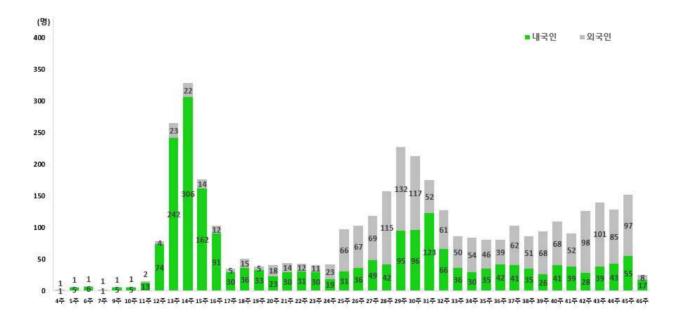






###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 60				
			3		<b>ŀ(</b> 단위:	명, %)	-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b>집단 빌</b> 신천지 관 련	<b>생 관련</b>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쥖사조	샌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6,326	474	3,477	8	3,392	77	1,235	1,140	54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600	60	424	12	357	55	57	59	0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총남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7,191	91	5,406	4,512	890	4	939	755	7	• <b>클럽 관련(277명)</b>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인천	1,065	115	697	2	686	9	135	118	3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광주	518	66	385	9	370	6	35	32	2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대전	445	36	270	2	268	0	87	52	1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진 19명 등 • <b>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b>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울산	166	46	84	16	64	4	21	15	1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세종	82	18	50	1	48	1	10	4	0	• <b>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b>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경기	5,672	747	3,341	29	3,244	68	878	706	25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61명)
강원	305	31	191	17	173	1	47	36	9	* 경기 143명, 강원 8명, 서울 8명 등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98명) * 경기 90명, 서울 7명, 경남 1명
충북	197	45	94	6	81	7	37	21	2	• <b>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59명)</b> * 서울 32명, 경기 19명, 광주 2명 등
충남	644	75	390	0	389	1	107	72	9	• 충남 아산 직장 관련(37명) * 충남 31명, 경기 3명, 서울 3명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35명)
전북	167	48	75	1	74	0	27	17	0	* 서울 33명, 경기 2명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32명)
전남	194	46	109	1	106	2	28	11	4	* 대구 29명, 경북 1명, 인천 1명 등 • 서울 강서구 보험사 관련(25명) * 서울 20명, 경기 4명, 인천 1명
경북	1,593	74	1,177	565	612	0	200	142	2	• <b>서울 음악교습 관련(24명)</b> * 서울 22명, 경기 2명
경남	353	91	213	32	178	3	25	24	10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22명) * 경남 22명
제주	60	20	15	0	14	1	19	6	0	• 서울 용산구 의류업체 관련(9명) * 서울 6명, 경기 3명 •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79명)
검역	1,849	1,849	0	0	0	0	0	0	14	* 경기 79명 • 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62명) * 서울 28명, 경기 25명, 전북 3명 등
*L 7J	27,427	3,932	16,398	5,213	10,946	239	3,887	3,210	142	• 충남 천안 신부동 콜센터 관련(28명) * 충남 27명, 경기 1명
합계	(%)	(14.3)	(59.8)	(19.0)	(39.9)	(0.9)	(14.2)	(11.7)	143	•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 관련(23명) * 서울 14명, 경기 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4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미국	9,504,758	233,292	116,780	1,126	2.45	2,888.11
인도	8,462,080	125,562	50,356	577	1.48	618.26
브라질**	5,590,025	161,106	-	-	2.88	2,631.84
러시아	1,753,836	30,251	20,396	364	1.72	1,218.79
프랑스	1,627,567	39,545	60,235	827	2.43	2,484.84
스페인**	1,306,316	38,486	-	-	2.95	2,815.34
아르헨티나	1,217,028	32,766	11,100	246	2.69	2,698.51
영국	1,146,488	48,475	23,287	355	4.23	1,711.18
콜롬비아	1,117,977	32,209	9,893	196	2.88	2,244.93
멕시코	949,197	93,772	5,567	544	9.88	717.46
페루	914,722	34,730	2,935	59	3.80	2,780.31
이탈리아	862,681	40,638	37,802	446	4.71	1,457.23
남아프리카공화국	734,175	19,749	1,761	72	2.69	1,263.64
이란	663,800	37,409	8,864	424	5.64	801.69
독일	642,488	11,226	23,399	130	1.75	779.72
칠레	518,390	14,450	1,808	46	2.79	2,767.70
폴란드	493,765	7,287	27,086	445	1.48	1,299.38
이라크	493,139	11,244	3,568	69	2.28	1,220.64
벨기에	487,949	12,708	7	21	2.60	4,206.46
우크라이나	450,934	8,312	10,746	186	1.84	1,029.53
인도네시아**	429,574	14,442	-	-	3.36	159.40
방글라데시	417,475	6,036	1,469	15	1.45	258.66
체코	403,497	4,526	11,552	196	1.12	3,806.58
카자흐스탄	154,321	2,259	0	0	1.46	829.68
스웨덴	146,461	6,022	0	0	4.11	1,450.11
일본	105,914	1,809	1,132	3	1.71	83.46
중국	86,212	4,634	28	0	5.38	6.07
우즈베키스탄	68,223	579	84	0	0.85	208.00
키르기스스탄	62,304	1,172	556	2	1.88	1,004.90
싱가포르	58,047	28	4	0	0.05	983.85
말레이시아	38,189	279	1,755	2	0.73	117.50
호주	27,645	907	12	0	3.28	110.14
태국	3,830	60	12	0	1.57	5.53
베트남	1,213	35	3	0	2.89	1.25
대한민국	27,427	478	143	1	1.74	52.90

<sup>\*</sup>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sup>\*\*</sup> 금일 업데이트 안 됨









## 붙임 3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

ī	P분	조치사항
집	입합·	O 가능
모임	ŀ행사	*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미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스포	츠 관람	○ 관중 입장(50%)
_	크 착용 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명 이상 모임·행사
국공	립시설	○ <b>정상 운영</b>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다중 이용 시설	중점 관리 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 관리, ③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①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 <b>기본 방역수칙 의무화</b>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관리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m²당 1명
	 시설	으로 인원 제한
종교	교활동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5교	○ <b>밀집도 2/3 원칙</b>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b>복지시설</b> 비집 포함)	○ <b>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b>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전 인원의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붙임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sup>®</sup>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sup>©</sup>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b>중점·일반관리시설</b> 의 <b>관리자(운영자)·이용자</b>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b>대중교통의 이용자</b>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b>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b>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b>관리자(운영자)·종사자</b>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u> </u>	도 구파 에지사 ᆾ 에지경칭 <i>)</i>
ı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ı	예외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ı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ı		·음식·음료를 <b>먹거나 마실</b> 때
ı		• 수영장·목욕탕 등 <b>물속·탕 안에 있을 때</b>
ı		•세수, 양치 등 <b>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b>
	예외 상황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b>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b> •얼굴을 보여야 하는 <b>공연</b> (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b>방송 출연</b> (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b>및 사진 촬영</b>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b>수어통역을 할 때</b>
ı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ı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ı		•업무 수행 중 <b>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b> (항공기 조종사 등) <b>가 있을 때</b>
		·본인 확인을 위한 <b>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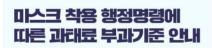




## 마스크 착용 관련 리플릿



겉면,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권고 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위반행위 적발 시당사자에게 <mark>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mark>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기타내고 그애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치단용 마스크(KF-AD) 보건용 마스크(NY의, NY의 등), 미탈시전용 마스크(NY의),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기릴 수 있는 천(만)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병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긴



#### 과태료 보과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확인)
- · 다중이용시설 등 ※거리두기조치변동시조정가능 161전 거리 드기 조치에 따른
-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 요양시설, 주·0한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재(운영재)·이용자
- 고의헌 나언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니병병·박닥장애인 등 조병이 도움 없이 스스로 미스크를 찬용하게 난번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착용이 어려울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시진 촬영(행사등에서 공식적인촬영을할때로한정). 수어통역을할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보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때

내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하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첚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 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